

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진혁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21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: 2025년 10월 20일
발의자: 최진혁 의원(1명)
찬성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경훈,
김규남, 김영철, 김용호,
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
김태수, 김현기, 김형재,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
민병주, 서상열, 신복자,
유만희, 유정희, 윤기섭,
이상욱, 이성배, 이종태,
이종환, 이효원, 이희원,
임춘대, 최민규, 허·훈
의원(30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여행가방 낙하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올바른 이용습관 정착을 위한 인식 제고가 요구되고 있으나, 현행 조례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부재함.
- 이에 시장이 시민을 대상으로 승강기 이용 시 안전수칙 준수와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승강기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에 ‘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수칙 교육 및 홍보사업’을 추가하여, 시민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근거를 마련함(안 제4조제1항제7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등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수칙 교육 및 홍보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승강기 안전관리 사업) ① 시 장은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	제4조(승강기 안전관리 사업) ① -- ----- ----- --.
1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	1. ~ 6. (현행과 같음) <u>7.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수칙 교 육 및 홍보 사업</u>
7. (생 략)	<u>8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u>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4조(승강기 안전관리 사업)제7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시민을 대상으로 승강기 이용 시 안전수칙 준수와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에서 예산을 기편성¹⁾하여 시행하고 있어,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2025 서울시 재난안전실 예산서

<서울시 재난안전정책 홍보 현황>

(단위 : 천원)

사업	사업예산	사업추진 세부내용
재난안전정책 홍보	40,000	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서울재난안전누리 운영